

2019. 6. 20

# 이 사 회 의 록

## < 안 건 >

-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안(법인·시설) 심의 의결
- 정관 변경 심의 의결
- 시설 정원 변경 심의 의결
- 취업규칙 개정 심의 의결
- 2019년도 2분기 과업 및 3분기 사업 보고
- 기타 보고

사회복지법인 일맥원



# 이 사 회 의 록

- 일 시 : 2019년 6월 20일(목) 14:00
- 장 소 : 일맥원 회의실
- 참석인원 : 김국진, 전병호, 고용덕, 김명길, 유이순
- 의결안건

-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안(법인·시설) 심의 의결
- 정관 변경 심의 의결
- 시설 정원 변경 심의 의결
- 취업규칙 개정 심의 의결
- 2019년도 2분기 과업 및 3분기 사업 보고
- 기타 보고

< 2019년 6월 20일(목요일) 14:00 군산시 석치 2길 14, 일맥원 회의실에서 상기 안건의 의결을 위해 이사회의를 소집한 바,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근거 7분 중 5분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되어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다 >

대 표 이 사 : 본 법인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회순에 따라 일맥원장의 인사와 전차회의록 보고를 요청하다.

이상훈 원장 : 바쁘신 중에도 공빈 이사회의에 참석하신 이사 분께 감사드리며 전차회의록을 보고하다.

대 표 이 사 : 전차회의록은 원안대로 받기로 유이순, 고용덕 이사의 동의와 재청, 그리고 전원 찬동으로 가결되다. 금일 안건은 공지해드린 대로 첫 번째는 2019년도 법인·시설의 추경예산 심의 의결 건, 두 번째는 법인 정관 변경 심의 의결 건, 세 번째는 시설 정원 변경 심의 의결 건, 네 번째는 취업규칙 개정 심의 의결 건, 다음으로 2019년도 2분기 과업 및 3분기 사업 보고, 기타 보고임을 설명하다. 먼저 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상훈 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이상훈 원장 :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법인 회계는 당초 세입·세출 예산액 131,182천원에 대하여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1,689천원이 감액된 129,493천원임을 설명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세입 대비 세출에 대한 이월금 수입이 110,973천원으로 확정되어 감액 편성됨을 설명하다.

전병호 이사 : 이월금 확정 변경으로 인한 추경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하다.

고용덕 이사 : 전병호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대 표 이 사 : 법인의 추가경정예산에 전병호·고용덕 이사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 다른 의견을 묻고 없으면 “가”하시면 “예”로 답해 주시기를 요청하다.

이 사 전 원 : 이의가 없어 “예”로 답하다.

대 표 이 사 : 이사 전원의 찬동으로 법인의 추가경정예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다음 안건은 시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훈 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이상훈 원장 : 시설은 유인물에서처럼 당초 세입·세출 예산액 1,851,089천원에 대하여 추가 경정예산은 33,475천원이 증액된 1,884,564천원이 됨을 설명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의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기준(인건비,운영비,생계비) 변경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었고, 후원금은 한국아동복지협회 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구입비 3,400천원, 군산시 어린이날 축하금 2,225천원, 초록우산 지원사업으로 5,000천원을 신청한 상황으로 추가 편성되어 지정 후원금이 증액되었음을 설명하다. 또한 법인 전입금은 운영비와 후원금을 분리하였고, 잡수입에서는 직원 급식비를 2.5천원/식으로 인상하여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세출 부분에서는 시설비로 식당개보수사업 설계비 5,000천원에서 2,700천원이 증액된 7,700천원, 재산조성비에서는 공기청정기 구입비 3,4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영비는 생계급여와 운영비 지급 기준 증액으로 증액 편성, 특별활동비는 초록우산 지원 신청 사업비 5,000천원과 어린이날 축하금 2,225천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설명하다.

유이순 이사 : 시설의 생계급여와 운영비, 지정후원금 증액, 식당 개보수로 아동 급식의 질 향상은 물론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아동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어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하다.

김명길 이사 : 유이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대 표 이 사 : 시설의 추가경정예산에 유이순·김명길 이사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 다른 의견을 묻고 없으면 “가”하시면 “예”로 답해 주시기를 요청하다.

이 사 전 원 : 이의가 없어 “예”로 답하다.

대 표 이 사 : 이사 전원의 찬동으로 시설의 추가경정예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다음 안건은 법인 정관 변경 건으로 이상훈 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이상훈 원장 :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민법 제52조에 의거하여 법인의 자산 총액이 변경 되면 정관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바, 현재 정관 상 본 법인의 기본재산 평가가액은 2014년 기준 총2,485,093천원으로 토지1,149,354천원, 건물 1,241,077천원, 현금94,662천원임을 설명하다. 이후 5년이 경과된 2019년 법인 기본 재산 평가가액은 과세 표준액 기준 22,960천원이 감액된 2,462,133천원으로 토지1,196,718천원, 건물1,170,753천원, 현금94,662천원이 되었음을 설명하다. 이와 같이 자산 총액이 변경되면 정관 변경 절차에 의거,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득한 후 법인 등기 변경 절차 또한 진행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현재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자산 총액은 설립 당시 6,883,838원이고, 2019년 기준 자산 평가액은 2,462,138천원으로 자산의 변동이 발생되면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자산총액 변경 등기를 매번 이행해야 하나 현재까지 정관상의 재산변동만 허가를 득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는 재산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함을 표하다. 하여 금번 법인재산 변동이 발생한 바, 허가를 득하고 자산 총액 변경 등기 절차를 이행 하려고 함을 설명하다.

전병호 이사 : 법령에 의거하여 자산의 총액이 변동되었다면 당연히 정관은 물론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등기를 이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면 금번에는 차질없이 진행함이 옳다고 답하다.

고용덕 이사 : 전병호 이사의 말씀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무 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득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인의 자산총액 변경 등기를 진행함이 옳다 사료되어 동의에 재청하다.

대 표 이 사 : 전병호·고용덕 이사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하면 “예”로 답해 주시기를 요청하다.

이 사 전 원 : “예”로 답하다.

대 표 이 사 : 이사 전원의 찬동으로 자산의 총액 변동이 발생한 바, 정관 변경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의결된 대로 정관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법인의 자산총액 변경 등기 절차 또한 진행하도록 하다. 다음 안건은 시설 정원 변경 건으로 이상훈 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이상훈 원장 : 현재 일맥원은 보호아동이 정원 80명, 현원 53명으로 매년 퇴소아동보다 입소 아동이 적은 상황이고,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도부터는 5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현저히 많음을 설명하다. 현재 아동 침실과 거실 총 면적은 835㎡로 정원 80명(거실면적6.6㎡\*80명=528㎡)

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으나, 점차 아동의 입소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법적기준에 맞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함을 설명하다. 그 공간을 제외한 면적은 634.37㎡로 15명의 아동 수를 줄인 65명의 공간 확보(429㎡)는 충분하여 현재 정원 80명을 65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고용덕 이사 : 전반적으로 향후 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현재 생활공간이 정원 변경과 법적 기준 설비에 부합하다면 65명의 정원 변경에 적합하다 사료됨을 설명하며 동의하다.

유이순 이사 : 고용덕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대 표 이 사 : 고용덕·유이순 이사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 본 원의 65명 정원 변경에 가부를 묻다.

이 사 전 원 : 이의가 없어 “예”로 답하다.

대 표 이 사 : 전 이사의 동의와 재청으로 일맥원의 정원은 80명에서 65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하다. 다음 안건으로 취업규칙 개정 건으로 이상훈 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이상훈 원장 :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표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므로 본 원 또한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개정(신설)하고, 전반적인 내용 또한 삽입과 삭제항으로 취업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을 설명하며 추가적으로 가정(신설) 내용에 대해 종사자 전원 의견 청취 후 동의를 받았음을 설명하다.

김명길 이사 : 법령이 개정되었고, 종사자들의 동의를 모두 구한 상황으로 일맥원의 취업 규칙 개정(신설) 건에 동의하다.

전병호 이사 : 김명길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대 표 이 사 : 김명길·전병호 이사의 동의와 재청이 있어 일맥원 취업규칙 개정 건에 다른 의견을 묻고 없으면 “가”하시면 “예”로 답해 주시기를 요청하다.

이 사 전 원 : 이의가 없어 “예”로 답하다.

대 표 이 사 : 전 이사의 동의와 재청으로 일맥원의 취업규칙 개정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다음 안건으로 2019년도 2분기 과업과 3분기 사업 보고에 대해 이상훈 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이상훈 원장 : 일맥원의 금일자 아동현황을 말씀드리면 남학생이 30명, 여학생이 23명으로 미취학9명, 초등생8명, 중학생14명, 고등학생17명, 대학생5명으로 총53명임을 설명하고, 2분기 입소아동은 없으며, 퇴소아동은 1명이 희망샘학교로 전원되어 3.19일자로 퇴소하였고, 보호기간 연장아동 1명이 퇴소 희망하여 4.4일자로 퇴소하였음을 설명하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일맥원의 2분기 사업으로는 4월부터 전북현대 축구인재육성사업이 전북현대FC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 아동8명이 참여중이고,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월2회 키즈카페 놀이활동 동아리가 신설되어 10명의 아동이 참여중임을 설명하다. 현대자동차그룹 피스&그린보트 어린이선상학교에 남학생 2명이 참석하여 중국, 일본, 제주, 부산 크루즈 여행에 참여하였고, 2018년도 모범아동 제주도여행에 아동6명과 인솔자 2명이 참여하였으며, 전북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전라북도 꿈나무체육대회를 군산에서 실시, 재원아동 상반기 만족도·욕구조사, 남군산교회 석식초대, 아동학대 설문조사, 급식기호도 만족도 조사 및 식생활진단 설문조사도 실시되었으며, 직원야유회,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사무소 주최 “공감 특특 부모교육”에 직원14명이 참여하였음을 설명하다. 3분기 사업으로는 하계캠프와 푸르덴셜 경제교육, 착한 에너지학교, 추석프로그램과 지역주민 & 후원자 식사초대, 조리실습 등이 예정되었음을 설명하다. 기타보고 사항으로는 6월말부터 9월초까지 아동복지시설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식당리모델링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군산시의 일상감사로 금월 착공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제로존 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2021년까지 3년동안 단계적으로 지원예정임을 설명하다.

유이순 이사 : 일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수고로 아동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아 보다 행복한 아동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폐회를 요청하다.

전병호 이사 : 유이순 이사의 폐회 동의에 재청하다.

대 표 이 사 : 유이순·전병호 이사의 폐회 동의와 재청으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어 폐회를 선언하다.

이로써 본 이사회의 안건을 마치고, 본 회의가 적법한 정관에 의거 적합하게 회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본 이사회 참석인원 전원이 날인함. ( 15시 10분 종료 )

2019년 6월 20일

대표이사 김 국 진



이 사 전 병 호



이 사 고 용 덕



이 사 김 명 길



이 사 유 이 순

